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2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최수진・임이자・김예지

강선영 • 인요한 • 조정훈

김선교 • 박준태 • 김장겸

김상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출연금으로 지급할"을 "출연금·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연금"을 "출연금·보조금"으로, "관리 등"을 "관리, 융자의 대상·기준·상환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②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	
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u>출</u> 연금·보조금으로
수 있다.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
	<u>자할</u>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③
방법과 제2항에 따른 <u>출연금</u> 의	<u>출연금·</u>
지급ㆍ사용 및 <u>관리 등</u> 연구개	<u>보조금관리,</u>
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용자의 대상·기준·상환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